

#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!  
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  
국민의힘 서초구 제4선거구 최호정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-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등 싱크홀 사고는 시민의 생명 안전과 재산피해 우려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, 이와 같은 사고는 사후 처리와 같은 대응으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어려운 만큼 사전에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.
- 현재 많은 도시지역의 경우 부족한 공간 부족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지하공간을 활용한 인프라 및 시설 복합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한 안전관리 방안은 미흡하고 신뢰도 또한 낮은 것으로 확인됩니다.
- 이에 따라 '25.5월 국토교통부는 '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' 마련을 통해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, 사후관리체계 정비,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, 지하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과제를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고,

- 서울시도 재난안전실 지하안전과를 신설하여 지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하 안전 점검 대상 공동 조사, 지하안전평가 이행실태 점검, 지반침하 관리 대책의 수립·시행 등을 하고 있습니다.
- 본 의원은 이번 제331회 정례회에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촉 위원에 ‘지하 안전’을 추가하는 등 도시계획 분야에서 지하 안전을 철저히 살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.
- 하지만 현행 국토의 이용 및 개발을 총괄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지하공간 안전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계획수립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계획 수립 시 지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.
- 이번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」은 도시·군 기본계획 수립 시 지하공간의 이용현황, 지반 안전성 확보방안 등 지하공간 안전 계획을 법정 요소로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였습니다.
- 이를 통해 초기 도시계획 단계부터 지하공간에 대한 안전 관련 대책이 체계적으로 수립·관리되고 대규모 개발 사업 시행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 발생 요소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